

문화산업보증 업무방법서

제 정 : 2025. 3.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업무방법서(이하 “방법서”라 한다)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문화산업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2.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시행령 및 공사의 내규에 따른다.

제3조(업무)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보증의 운영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증채무의 이행
4. 구상권의 행사 및 관리
5. 문화산업보증 제도 및 문화산업 지원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4조(방법서의 변경) 이 방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고,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방법서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가 이를 정한다.

제2장 보증대상

제6조(보증대상채무) 보증대상채무는 문화상품의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한다.

제7조(보증대상기업) 보증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의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사업자로 한다.

1.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공연, 출판 등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문화상품

제8조(보증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보증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채무(공사로부터 감면받거나 법률에 의해 면제 또는 면책 받은 채무는 제외)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2.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금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채무자가 허위 수출계약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4. 채무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 중인 경우
- 5. 채무자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6. 그 밖에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3장 보증운용

제9조(보증취급절차) ① 보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10조(부분 보증) 공사는 제6조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분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부분보증비율에 대한 세부운영방법은 공사가 정한다.

제4장 보증료 등

제11조(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연율 1,0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보증료의 환급) 채무자 등이 보증료의 환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환급보증료를 지급한다.

제5장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 행사 등

제13조(보증채무의 이행) 채무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한다) 공사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약관 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다.

제14조(보증채무이행의 범위) 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은 기업의 주채무와 그와 관련된 종속채무로 한다. 다만, 종속채무의 범위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인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6조(채무의 감면) 채권의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채권의 상각 및 매각) 공사는 「무역보험법」 제53조의3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여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8조(준용규정) 이 방법서에서 공사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보증업무, 채권관리 업무 등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미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제정)

이 방법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